

보도자료



보도	2023.9.21.(목) 조간	배포	2023.9.20.(수)				
담당 부서	금융감독원	책임자	국 장 서재완 (02-3145-7580)				
	자본시장감독국	담당자	팀 장 유석호 (02-3145-7587)				
	금융투자협회	책임자	본부장 천성대 (02-2003-9013)				
	증권·선물본부	담당자	부 장 정수섭 (02-2003-9110)				

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및 공시방식 등 개선을 통해 투자자에게 보다 합리적인 예탁금 이용료가 지급됩니다.

- 「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」제정·시행 -

주요 내용

- ※ '23.3월부터 운영된 T/F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「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」이 제정·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 - ① 이용료율 관련 직·간접비 구분 및 비용 배분방식이 명확해짐에 따라 투자자는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된 이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
 - ※ '23.8월말 기준 투자자예탁금 규모가 약 64조원임을 감안할 때, 향후 예탁금 이용료율이 50bp 인상될 경우 약 3,200억원의 이용료가 추가 지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
 - ② 이용료율 산정주기를 분기 1회 이상으로 개선함에 따라 시장 금리 변동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이용료율이 재산정됩니다.
 - ③ 이용료율 산정시 내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절차가 마련됩니다.
 - ④ 이용료율이 예탁금 종류별·금액별·기간별로 공시되어 증권사별 비교가능성이 제고되고 투자자의 선택권이 강화됩니다.
- ◈ 금투협회는 9월중 모범규준(안)을 사전예고하고 10월중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, 금감원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.

모범규준 제정배경

- □ 그간 증권사 등이 **투자자**에게 **지급**하는 **예탁금 이용료 산정**의 **적정성**에 대해 **국회** 및 **언론** 등을 통해 **문제**가 **제기**되어 왔고,
 - 이에 금감원은 '23.3월부터 금투협회 및 주요 증권사 등과 「예탁금 이용료 합리화 T/F」를 구성·운영하여, 예탁금 이용료 관련 현황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.

< 예탁금 이용료 합리화 T/F 진행경과 >

- [개최일자] '23.3~9월중 Kick-off 및 실무회의(총 4회) 개최
- [참여기관] 금투협회(증권2부), 예탁금 이용료 지급액 상위 증권사
- [논의사항] 증권사별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 등 현황, 예탁금 이용료 산정방식, 점검주기, 내부통제절차, 공시방식 등 관련 개선방안

Ⅱ. 모범규준 주요내용

1 이용료율 관련 직간접비 구분 및 비용 배분방식이 명확해집니다.

- □ (현황) 증권사가 예탁금 이용료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직접비*와 간접비*로 구분되나, 증권사별로 직접비·간접비 구분기준이 상이하거나 비용배분에 차이가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.
 - * 직접비: 예금자보험료 등 예탁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 간접비: 감독분담금 등 예탁금 외의 업무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(공통비)
- □ (개선) 비용산정시 직접비와 간접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한편, 직접비는 비용에 전액 배분되고 간접비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배분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.



2 이용료율 산정주기를 분기 1회 이상으로 개선합니다.

- □ (현황) 금투협회 규정은 예탁금 이용료율 변경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정하고 있으나, 증권사별로 이용료율 점검주기가 상이*하고 시장금리 변동을 적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 - * [예시] (A증권사) 연 1회, (B증권사) 반기별, (C증권사) 수시(시장금리 변동시)
- □ (개선) 시장금리 변동 등을 감안하여 예탁금 이용료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주기를 분기 1회 이상으로 개선합니다.

3 이용료율 산정 관련 심사위원회 등 내부통제가 마련됩니다.

- □ (현황)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관련 내부통제 절차가 증권사별로 상이하여, 일부 증권사는 이용료율 변경시 유관부서 심의절차 또는 대표이사 결재(보고) 절차가 없는 사례*도 있습니다.
 - * [예시] (A증권사) 내부심사위원회 심사 + 대표이사 결재 (B증권사) 대표이사 결재 (내부심사위원회 심사無) (C증권사) 본부장 결재 (내부심사위원회 심사無)
- □ (개선) 소비자보호 등 예탁금 이용료 관련 부서로 구성된 내부심사 위원회를 통해 이용료율 산정내역의 적정성을 심사하고, 대표이사 결재(또는 사전보고)를 받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절차가 개선됩니다.



4 중권사별 비교가 용이하도록 종류·금액·기간별 이용료율이 공시됩니다.

- □ (현황) 증권사는 예탁금 이용료율 현황을 금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중이나, 증권사별로 예탁금 종류, 금액 등 공시방식이 상이하고, 이용료율 변동추이 등은 공시되지 않고 있습니다.
- □ (개선) 체계적인 예탁금 이용료율 공시를 위해 홈페이지 공시화면을 예탁금 종류별*·금액별**등으로 세분화하고, 기간별 추이를 추가하는 등 중권사별 비교가 용이하도록 공시방식이 개선됩니다.
 - * 위탁자 예수금, 집합투자증권투자자 예수금, 장내파생상품거래 예수금 등
 - ** 50만원, 1백만원, 1천만원, 1억원 등



Ⅲ. 기대 효과

- □ 예탁금 이용료율 관련 비용 배분방식, 산정주기 등이 보다 구체화됨에 따라, 투자자는 시장금리 변동 등을 감안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된 이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.
 - '23.8월말 기준 투자자예탁금 규모가 약 64조원임을 감안할 때,
 향후 예탁금 이용료율이 50bp 인상될 경우 약 3,200억원의 이용료가 추가 지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,
 - ※ [예시] 최근 A증권사는 예탁금 이용료율을 현행 0.25%에서 1.05%로 인상할 예정임을 투자자에게 공지
 - 예탁금 이용료율은 향후 증시상황 및 증권사별 기준변경 등에 따라 추가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또한,	현재	금투협회	규정에서	정하고	있는	예탁금	이용료	관련
사항을	을 보다	구체화학	한 모범규준	음을 제정	함으로	노써 예트	라금 이용	용료율
산정병	방식 의	명확성이	제고 되고	,				

 공시방식 개선으로 증권사별 이용료율 차이가 명확하게 비교· 공시되어 증권사간 경쟁이 촉진됨에 따라, 증권사에 대한 투자자의 선택권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Ⅳ. 향후 계획

□ 금투협회는	9월중	모범규준(안)을	사전예고 하고	10월중	제정을
완료할 예정	이며,				

- 예탁금 이용료율 비교공시는 금투협회 및 증권사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시행('23년말)될 계획입니다.
- □ 금감원은 모범규준 시행 이후 증권사의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· 지급 및 공시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,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이용료가 지급되도록 점검·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.

[☞]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://www.fss.or.kr)